

의안번호	
의 퇴 인	이건태 의원
회 답 일	2025.01.21.
추계번호	25C0008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(학교시설 등의 이용)	(제1항)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원활히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교육감 등 학교시설 관리 주체에게 학교시설 개방·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	
		(제3항) 제2항의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·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		(제4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·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2	안 제11조의2 (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면책)	제6조에 따른 지도·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·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 (학교시설 등의 이용) 안 제11조의2 (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면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시설 관리 주체에게 학교시설 개방·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학교 시설 등의 개방·이용과

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

- 현행법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공립 및 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
- 이에 따라 시·도별로 교육규칙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¹⁾, 해당 규칙에 따라 ‘사용허가 신청, 이용 수칙, 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’이 진행되고 있음

[표 1] 학교시설 개방 현황(2024.8.1.기준)

(단위: 교)

학교급	개방여부	체육장	체육관	강당	일반·교과 교실	특별 교실	시청각실
초	무	997	1,981	831	3,444	3,818	1,325
	유	5,225	3,359	1,346	2,836	2,369	844
	시설없음	58	940	4,103	—	93	4,111
중	무	6,280	6,280	6,280	6,280	6,280	6,280
	유	442	492	413	1,486	1,931	675
	시설없음	2,382	1,581	570	1,733	1,207	590
고	무	395	1,146	2,236	—	81	1,954
	유	3,219	3,219	3,219	3,219	3,219	3,219
	시설없음	502	574	460	1,168	1,408	755
특수	무	1,809	1,208	495	1,201	942	562
	유	58	587	1,414	—	19	1,052
	시설없음	2,369	2,369	2,369	2,369	2,369	2,369
각종 학교	무	58	38	31	124	121	61
	유	104	67	54	68	63	42
	시설없음	30	87	107	—	8	89

자료: 교육부

- 또한, 서울특별시 용산구·동작구, 경기도 의정부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²⁾,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와 5:5비용을 분담하여 이용자 배상보험을 지원하고 있음³⁾

1)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등 ‘조례’로 규정됨

2) 「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」, 「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」 등

3) 202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2개 자치구에 대하여 1개 자치구당 3개교에 배상보험 지원을 실시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에 필요한 지원 등이 실시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신설 또는 추가될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지원 예산의 규모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유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의 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지원이 실시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움
 - 참고로 ‘서울특별시교육청’의 경우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‘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’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 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에 25.5억원의 예산으로 ‘2023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연 800시간 이상 개방 148개교’를 대상으로 교당 평균 17,216천원을 지원⁴⁾
 - 다만, 해당 인센티브 사업비는 매년 전체 사업비에 따라 세부기준이 변동되어 왔으며, 2022년도분에 대한 2023년 인센티브 사업은 80.0억원의 예산으로 355개교에 대하여 교당 평균 20,651천원이 집행되었음
 - 이에 동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4)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체육시설(운동장, 체육관) 사용허가 실적을 기준으로 2023년도분에 대하여 1,700시간 이상 학교에 대하여 2,800만원, 1,200시간이상 1,700시간 미만 학교에 대하여 2,000만원, 800시간 이상 1,200시간 미만 학교에 대하여 1,300만원의 지원금을 계획(자료: 서울특별시 교육청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